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6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이원택·임미애·주철현
김한규·임호선·송옥주
윤준병·이언주·서삼석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10에 따라 생산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사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0(생산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는 경우 이 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의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급조절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5조(수급조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10에 따라 생산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사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신 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의10(생산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는 경우 이 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의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